

社会福祉 施設과 家族制度의 變化

朴 勇 煥

社会福祉에 대한 需要와 認識이 增增高調되고, 이에 대한 对策이 社会問題의 中心課題로 重要視됨에 따라, 社会福祉에 대한 政策의 確立과 綜合的인 对策에 따른 具體的인 施設이 諸般 社会的問題를 背景으로 時急히 要請되고 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本橋에서는 勿論, 諸福祉 施設 問題가 아닌 核家族化인 家族制度의 變化에 依하여 發生되, 或은, 直接的으로 發生되는 問題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核家族化의 傾向이 우리들 주변에서 점차 普遍的인 家族形態의 하나로 定着, 進展되고 있는 狀況에 따라 그 自体가 內包하고 있는 問題性이 家族形態上의 矛盾을 지니고 있는 點에 依하여 以前과 比較하여 社会福祉 問題와 密接하게 關連하고 있음을 認識할 수가 있다. 同時에, 福祉問題에 대한 对策가운데 施設의 하나로서 福祉施設의 供給問題가 檢討되고 그 役割이 期待되는 以上 都市 및 建築計劃의 分野에서 앞으로 如何히 対応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特히 관련 分野의 研究課題가 아닐 수 없다. 아직 社会福祉에 대한 觀念이 全般的으로 貧弱한 實情으로 特히 그것이 社会的 보호나 원조를 필요로 하는 特殊층에 대하여 정부나 社会共共團體의 特別한 조치로 認識, 轉換을 가지는 경우가 全般的인 傾向인 것 같다.

同時에, 現 社会福祉의 實情이 社会的 一部 특수층, 即, 例를 들면 生活困窮者, 身體 및 精神 障害者 등의 對象者를 基盤으로 하고 있는 初步的 段階의 狀態로, 制度上에 있어서도 內容이나 水準이 극히 制限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점차 深刻化하는 多樣하고 複雜한 諸般 社会的 問題의 解決策가운데 社会福祉 政策의 確立과 추진이 如何히 重要하고 時急한 것인가를 再認識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家族制度의 變化에 따른 核家族化의 進展은 數的으로나 내포하고 있는 矛盾點에 의하여 必然的으로 社会福祉 問題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우선 核家族化의 意味, 性格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①, 通常 核家族이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形態上, 父母와 그 2世들로 구성되는 2世代家族(혹은, 單純家族)을 말하고 이러한 家族形態의 進行을 核家族化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나 그 意味나 性格上으로 볼 때 「核家族化」란 一時的인 家族形態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家族周期上의 形態를 意味한다. 即, 子息이 成人이 되어 그 父母로부터 獨立하여 自己의 配偶者와 더불어 核家族를 形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子息이 다시 成人이 되어 父母를 떠나 核家族를 形成하고 一하는 것으로 이 形態가 直系家族 形態(3世代家族)로 變型하는 일이 없는 것을 核家族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家族形態가 單純히 서구의 文化的인 模倣에 依한 것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家族形態의 理想的인 타입(Pattern)이라고 생각 하지는 않는다. 速히 膨脹하여 온 都市를 배경으로, 必然的으로 同伴하는 社会變化에 適應하기 위하여 싫던 좋던 발생하는 家族形態의 과도기의인 現象으로 볼 수가 있겠다.

② 이와같이, 核家族은 直系家族과 比較하여 몇 가지의 特徵을 지니고 있으나 우선, 家族形態의 構造的인 面에서 생각하여 볼 때, 核家族의 경우 結婚을 계기로 個人이 새로운 世帶單位를 形成함에 따라 本來 自己가 태어나고 자란 家族(Family of Orientation)으로 부터 分離하는 일이다. 이 점에 대하여 3世代的 直系家族에서는 2개의 核家族이 複合되어 하나의 世帶單位를 形成하고, 各 世代別 家族이 世帶單位속의 下位單位를 形成하고 있는 점이다. 直系家族制度에서 存在하는 核家族과 核家族制度에서의 核家族과의 相違點은 이미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後者の 경우, 子息이 成人이 되어 結婚하면 配偶者(嫁) 및 子(孫)를 포함하여 다시 直系家族의 形態로 變形하는 데에 비하여 前者는 獨立하여 새로운 世帶를 形成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 경우 원래의 家族은 分離에 依하여 家族構成人이 減員됨으로 核家族制度의 家族 그 自

체가 하나의 完結한 生命周期를 가지는 것을 意味하게 된다. 家族内部的 構造에 있어서 父系的인 直系家族에 있어서는 가족관계가 夫側에 絶對的으로 편중하고 있는 反面에 核家族의 경우는 家族의 内部構造가 對稱的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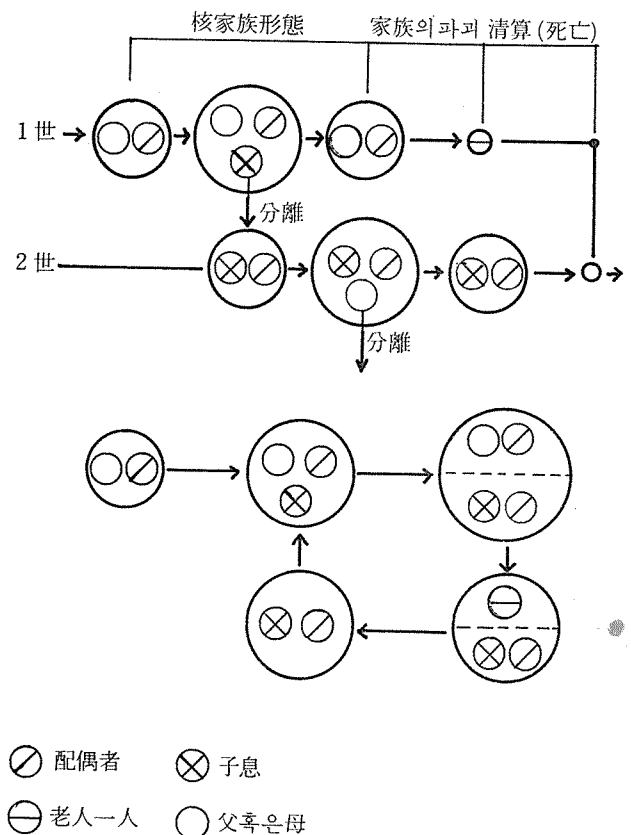
다음에, 機能上的의 特徵으로 核家族은 經濟, 意思決定, 정서적 統合, 育兒 및 教育問題 等を 어떠한 親族으로 부터도 獨立하여 核家族의 責任下에서 해결하는 기능을 지니는 점이다.

以上에서와 같이 家族의 構造와 機能上的의 特徵에서 이미 추측 할 수 있듯이 家族制度의 變化에 따라 家族内의 人間關係에 커다란 變化가 따르게 됨을 알 수가 있다. 從來, 直系家族에서 家族員 相互關係가 縱的 構造에 의하여 유지 되어 온 事實에 比하여 橫적인 關係가 核家族의 경우에 있어서는 家族의 安定에 대하여 重要한 意味를 지니게 된다. 즉, 橫적인 關係의 파괴가 곧 家族自由의 파괴를 意味하고 있기 때문이다.

㉓ 여기까지, 核家族의 性格과 意味에 대한 몇가지의 特徵을 열거 하였으나, 이점에 대한 더욱 자세한 記述은 오히려 社会学 分野, 特히 家族論等을 参考하기로 하고, 核家族化에 의하여 發生하는 諸般 問題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기로 하자. 이미 지금까지의 記述이 어느 程度 暗示하고 있는 것 처럼, 核家族이 完結한 生命周期를 지니고 있는 사실과 같이 形態에 대한 矛盾을 內藏하고 있는 것으로 必然的으로 몇가지의 問題를 낳게 한다. 이 問題는, 勿論, 直系家族制度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程度나 問題의 深刻性에 대한 程度가 核家族制度에 比하여 훨씬 적은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 첫째로 老人問題를 들 수가 있다. 이 問題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家族의 構造의 變化에 근본적인 原因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核家族制度는 老人으로 부터 徐徐히 家族, 나아가서 家庭을 빼앗고, 점차 老人으로 하여금 불행한 狀況으로 이끄는 過程에 依하여 그 一生을 맺게 하는 家族周期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周期에서 보는 것과 같이 老人은 家族으로부터 疎外되는 結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家族에 대하여 從來와 같은 老人의 扶養과 安定된 生活를 基盤으로 自立 할수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그것에 대한 期待가 社會의 役割로 옮겨져, 社會가 그 期待에 對應하여야 하게 된다. 그러나, 現代의 社會는 아직 그 期待의 大部分이 家族에게 依存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겠다. 둘째로 兒童福祉問題를 들 수가 있다. 이 問題도 老人問題에서 처럼 家族의 構造의 變化에 의하여 일어나는 問題로 父母의 死別 혹은 離婚等으로 母子 혹은 父子世帯, 孤兒問題 等 欠損家族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이것은 또한, 남은 한쪽 父母의 問題일 수도 있다. 卽, 欠損家族이 子息에게 미치는 영향이 深刻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直系家族制度에서와 같이

父母를 代身할 수 있는 親族이 없기 때문에 남은 한쪽의 父母에 대한 生活手段의 問題가 생기게 된다. 만약 父母의 再婚을 假定하면 그것이 父母의 問題를 해결 할수는 있을 지 모르나, 오히려 子息에 대한 問題를 더 악화 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基本的으로 子息의 問題에 대하여 어떠한 解決策이 강구되지 않는 限 欠損에 대한 福祉問題가 해결 되지 않는다는. 이 以外에도 아동問題는 앞에서 말하였듯이 그 問題性이 老人問題와 같이 一般社會의 全般的인 傾向에서 考察 할수가 있으나 家族構造上的의 側面에서 볼 때, 위의 家族 以外에도 그 原因이 있음은 새삼 強調할 필요도 없다. 特히 父母가 모두 職場을 가지는 경우 子息의 育兒, 教育, 社會化에 대한 문제가 따르게 된다. 더우기 子息이 많을 경우를 假定하면 事實上 젊을 때 職장을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以上에서와 같이 結局, 核家族化에 따른 家族의 構造的 變化는 그 家族形態의 矛盾에 의하여 老人과 兒童에 대한 問題를 同伴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은 위에서 記述한 核家族의 周期를 나타내고, 直系家族의 그것과 비교한 것이다.

그림. 核家族의 生命周期와 直系家族



㉔ 以上의 그림에서 考察할 수가 있듯이, 各 問題들은 그 問題性이 多面的이고, 多次元的인 特性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諸問題에 對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社會福祉에 대한 共通的인 理解를 基盤으로 綜合的인 視点에서 對策에 대한 어프로치

(Approach)가 모색되어야만 하겠다. 또한, 現 社会福祉 对策의 水準을 發展시켜 福祉에 대한 需要 및 多樣性에 対応할 수 있는 政策의 擴大는 勿論, 余暇問題, 生活環境에 관한 問題, 日常生活上の 問題에 이르기까지 그 範圍나 福祉水準의 向上이 常時 檢討되어야만 하겠다. 各種의 施策이 相互 補完的인 關係를 가지고, 福祉에 대한 需要가 剛一的, 固定的인 規準에 依해서만 좌우 되어서는 안 되겠으며, 各種의 施策이 提供하는 手段이나 機會에 대하여 選擇이 可能하며 多様な 需要가 適切한 方法으로 實現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效果的인 展開를 위하여 各種 施策의 有機的인 構成을 위한 立案이나 策定이 綜合的 觀點의 配慮가 肝要함을 再認識하여야 하겠다.

㉑ 既存, 老人과 兒童에 관한 海外의 社会福祉 对策에 对한 現況의 大略的인 것을 紹介하여 보기로 하자. 먼저 老人問題에 对한 것으로

① 相談: 老人과 家庭과의 变化, 高齡者세대 社会的으로 高립된 老人 等으로부터 일어나는 老後生活에 对한 各種 相談.

② 年金: 老後生活의 生計維持 經濟的인 自信을 위한 手段으로 이 以外에 扶養, 就勞, 財産收入 等を 들 수가 있다. 現在 子의 扶養에 依存하고 있는 傾向이 絶對的인 是에서 말한 바와 같으나 参考로 美国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年金의 制度가 充分히 整備되어 老後의 經濟的 自立과 安定에 对하여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将来 公的인 年金制度의 充實은 물론이며 私的인 年金이나 保險等 綜合的인 年金制度의 設計가 必要한 것으로 안다.

③ 就勞: 高令者에 对한 就職 알선은 비단 生計維持를 위한 目的뿐 만이 아니라 健康維持 社会參與에 对한 意識 余暇의 活用 等 여러 가지 役割이 期待되는 것으로 老人의 適性에 맞는 就勞의 種類가 開發되어야 하겠다.

④ 訪問: ①의 機能을 보다 積極化한 것으로 좁은 意味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老人세대를 對象으로 個別 訪問을 通하여 老人의 身辺 等에 대한 가정봉사를 실시하여 老後의 不安 고독 等에 对한 对策으로 特히 이런 類의 活動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전 부터 民間단체에 의하여 출발하여 發達하고 現在 그 種類도 一般老人을 對象으로 취미, 교양, 老後生活의 充實에 이르기까지 그 機能이 多様하다.

⑤ 社会活動: 余暇 利用으로 레크레이션(Recreation)은 勿論, 教養의 向上地域社会와의 交流 ④의 機能과 함께 地域社会에 对한 奉仕活動을 通하여 社会 參加 意識을 높이고 地域社会의 構成員으로써 老人層의 役割을 形成하고 再認識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⑥ 健康, 의료: 老人問題에 对한 老後生活의 健康管理나 질병에 对한 의료의 普及은 各種 对策上 中心的인 課題로 重要한 部門이다. 現在로서는 의료보험의 擴大를 最

大의 目標로 삼고 있으나 将来, 老人 의료에 대한 無料化뿐 만이 아니라 보다 積極적인 対応으로서 心身의 健康管理의 問題 — 具體的으로는 定期的인 健康진단, 機能회복훈련(rehabilitation) 保健知識의 普及·健康相談 等으로 그 機能이 發展되어야 하겠다.

⑦ 各種施設: 위의 ①~⑥까지가 老人福祉对策의 소프트(soft)한 側面 即 福祉对策에 对한 制度와 그에 따른 運營 및 管理에 主眼點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하여 物的 條件의 側面에서 福祉施設에 对한 对策을 既存 福祉施設의 供給面에서 整理하여 보자. 우선 一般的인 것으로 ⑥과 關聯되는 의료施設과 老人 住宅問題를 基本的인 施設로 하여 心身의 핸디캡, 經濟上의, 問題, 家庭에서 養護가 不可能한 老人에 对한 問題 等を 解決하기 위한 各種 老人 收容 施設 等이 있으며 이 以外에 老人의 日常生活과 밀접한 關係를 지니는 地域福祉施設로— 오락, 余暇 集会 等を 위한 施設等이 있다. 勿論 위의 各種施設은 施設供給의 形態上 一定의 特定한 機能만을 지니는 施設과 多種의 機能이 複合된 施設이 있다. ①~⑦까지의 各各은 細部的으로 多様な 施設과 이에 따른 管理 運營의 方法들이 아래에 紹介하는 兒童問題에서도 같이 서로 連關性을 지니고 有機的인 조직으로 構成되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施設供給을 위주로 兒童問題에 对한 对策을 살펴보면 醫療施設 住宅問題는 앞의 老人問題에서와 같이 共通的인 點으로 그外에 ② 保育施設: 兒童福祉施設의 中心施設로서 保育施設을 들 수가 있다.

欠損家族 母子, 父子世帯, 父母가 모두 職場을 가지는 경우, 幼兒 및 兒童教育의 充實을 도모하기 위하여 供給하는 施設로서 今後, 兒童問題의 增大에 따라 保育率이 크게 신장되리라 생각된다.

③ 놀이터: 兒童에 있어서 놀이터는 生活의 연장으로써 健全한 發育을 위하여 그 必要性이 不可欠하다.

놀이터의 不足은 여러 가지의 事故를 초래하는 原因이 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特히 兒童의 交通事故의 主要因이 된다. 公園과 같이 關連하는 施設과 함께 兒童의 任生活를 中心으로 놀이터의 確保가 時急하겠다. 關連 施設中 兒童館은 宅内の 놀이터란 機能 以外에도 兒童의 健全한 育成을 위하여 社会性을 키우고 社会教育을 위한 拠点 施設로 그 役割이 期待된다.

③ 收容施設: 身體 및 精神障害兒童을 위한 치료와 獨立生活를 위하여 필요한 知識을 가르치기 위한 施設과 非行 및 不良兒童의 指導를 위한 施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⑥ 이와같이 핵가족化에 의하여 일어나는 各各의 問題들은 그 問題性이 根本的으로 社会的 分野에 속해 있는 것으로 또한 그 根本的인 해결의 대부분을 結局 政策的인 側面에 期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建築計劃 分野

에 있어서도 특히 海外의 경우 福祉 施設에 대한 建築計 劃의 아프로치(Approach)에 의한 研究가 활발하고 그 結果가 누적되어 어느 정도의 役割을 담당해 왔다고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施設의 適正規模 配置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들을 指摘할 수가 있다. 그리고 現實적으로 政策을 誘導하는 하나의 有力한 手段으로 利用되어 왔다. 한편 從來 建築計劃의인 아프로치(Approach)에 의한 研究에 대하여 一部の 批判이 없지 않으나 研究上 技術의인 傾向의 深化에 따라 現代社會의 基本的인 問題에 대하여 解答할 수 있는 힘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現實적으로 社會的인 問題를 建築計劃의인 아프로치에 依하여 說明하려는 事實에 대한 研究上의 어려움을 意味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建築計劃의 立脚點이 生活와 空間과의 対応關係에 있다고 한다면 具體的인 生活上의 問題에 直面하여 그 構造를 명확하게 하고 空間과의 關聯性을 問題로 삼는 方法上의 순서에 의하여 建築計劃 自体를 活性化하는 일이 恒시 不可欠하다. 核家族化의 進展과 福祉問題에 대한 構造的인 重要性을 解明하는 것은 이 問題에 對한 建築計劃의인 아프로치의 接點을 發掘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建築計劃의 새로운 可能性이 개척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福祉와 關聯하는 各種 施設問題에 대한 計劃上의 從來 研究 實態를 要約하여 보기로 하자.

㉑ 利用圈에 대한 概念은 그것이 施設 研究의 支配的인 位置와 主流를 지켜왔고 특히 利用者의 施設 出現이 確率의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施設에 있어서 그것이 곧 施設의 規模나 配置問題에 대하여 比較적으로 容易하게 連關性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 理由인 것 같다. 現在에도 그러한 傾向을 엿볼수 있는 點에 비추어 볼때 施設 研究의 實態에 대한 全般的인 파악을 위해 不可欠한 分野라고 생각될 뿐 만이 아니라 既存 施設 研究의 實態에 대한 批判의 초점이 될지도 모른다. 利用圈의 概念은 利用者의 地域의 分布라고 하는 即 施設의 特性을 나타내는 하나의 指標가 距離 概念으로 一元化 되는 것을 기존 研究에서 考察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利用圈 모델이 제안되어 왔으나 그 代表的인 것을 들면 1931年 W. J. Reilly에 依하여 提出된 重力 모델과 額田氏의 포텐셜(Potential-Model) 모델을 들 수가 있다.

이 以外에도 施設 計劃 交通計劃 都市計劃의 次元에서도 多様な 모델이 開發되어 있으나 數學的으로는 위의 것들을 踏襲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그 大部分이 距離를 最大 寄與變數로 하여 單調減少 關係로써 利用者의 出現率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圈域의 設定에 關係서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施設 研究 分野의 代表的인 概念을 例로 들면 다음과 같다.

- ㉒ 平均距離 ㉓ 累積曲線 50 or 70%圈

㉔ 出現率 1.0圈域 ㉕ 來館者 密度比 0.1圈域
특히 ㉔는 絶對적인 評價를 基準으로 하고 있는 點에 특 징이 있다. 그러나 이 評價基準은 結局 設定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 意味가 타당한지 어떤지에 대하여 考慮하지 않고 使用하는 것은 거의 無意味 해진다. 바꾸어 말 하면 어떤 施設의 圈域이 몇 미터라고 하는 것이 結果的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그 自体가 研究者에 依한 設定值에 不過한 것으로 다른 評價基準에 따르게 되면 全然 그 設定直가 달라질 可能性이 있다. 이와 같이 圈域은 相對的 評價의 指標(Filter)로서는 有效할지 모르나 어떤 施設의 圈域이 몇 미터(m)라고 單純히 規定지어 생각할 수는 없다. 오히려 設定한 基準의 意味를 생각해야 할 必要가 더욱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아래에 利用圈 算定에 대하여 그 問題點을 지적하여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1) 利用圈 모델의 研究는 크게 나누어서 實地의 分布 狀態에서 출발한 歸納的 研究와 反對로, 理論모델에서 출발하여 實地의 分布에서 檢証하는 演繹的 研究가 있으나 實地의 分布 狀態를 파악하는 方法이 대단히 곤란하다.

왜냐하면 地域施設의 利用者分布는 그 形態의 樣相(pattern)이 多様하여 簡單히 施設을 基點으로 하는 吸引力의 等高線을 作成하기가 困難하기 때문이다. 이 點은 施設의 規模나 性格에 依한 영향도 勿論 크지만 一般的인 傾向에서 地域福祉施設 利用者의 경우 利用者數가 限定的인 點과 分布 自体가 不연속적인 點이기 때문에 空氣密度와 같은 連續線을 作成하는 일은 곤란하다. 또 그 分布를 擴大하면 할수록 形態의 樣相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며 利用者의 랜덤(Random) 要素가 커지게 되고 만다.

2) 現實적으로 施設 利用者 分布는 距離 만으로 決定될 수는 없다. 對象人口의 密度 交通形態 地形 住宅環境 運營 他 施設과의 關聯 等에 의하여 利用者의 分布는 커다란 作用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원의 形態를 상상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오히려 그러한 點이 研究上의 問題가 되어야 하겠다.

3) 實際의 利用者 分布는 施設差나 屬性 別의 要因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同種 同規模의 施設이라 하더라도 그 分布에 대한 施設間의 差가 심하여 그것은 利用者의 屬性 別 分布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差가 심하므로 이 點을 무시하고 單純히 近似曲線을 作成할 수는 없다.

4) 施設 內容(機能 空間構成 等)의 파악이 不分明한 채 利用者 分布 만을 單純히 比較 分析하는 것은 無意味한 일이다. 위의 3)과 關聯하지만 利用者 分布가 利用者와 施設과의 対応關係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當然히 施設의 內容이 同時에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利用圈 分布는 利用圈 모델 作成 施設 配置로 展開되는 基本的인 概念 임은 앞에서 말했으나 그것 만으로 單純히 進行되어서는 問題의 本質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게 된다.

以上の 1) ~ 4) 까지指摘한 点들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결국 利用圈 모델 그리고 세밀化를 위한 研究上의 方向이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될 중요한 問題点들이다. 이점은 곧 既存 分析에 있어서 施設 内容과의 対応 關係가 거의 無視 되어온 事實을 指摘할 수가 있다. 距離가 멀어짐에 따라 出現率이 낮아진다는 極히 常識的인 事實을 細密化, 모델化하는 研究上의 方向을 全然 無意味하게, 혹은 否定的으로만 理解해서는 안되지만 地域社会에 대한 施設供給이 어느 程度의 施設網을 形成할 수 있을때 距離尺度가 出現率의 絶對的인 要素가 될 수는 없다는 巨視的인 觀點에서 施設計劃에 있어서 研究상의 アプローチ(Approach)에 대한 再考가 切實하여짐을 強調하고 싶다.

以上에서 家族制度의 变化란 側面에서 發生하는 社会福祉에 대한 需要에 대하여 記述하고 福祉의 綜合的인 对策 가운데 施設의 役割과 建築計劃의 아프로-치에 依한 研究상의 實態와 問題点에 대하여 말하겠다.

㉔ 社会福祉의 側面에서 볼 때 福祉需要의 增加는 家族形態의 变化가 그 一部分的인 要因에 지나지 않은은 本稿의 書頭에서 記述한바와 같다. 그리고 總合的인 觀點을 必要로 하는 福祉对策의 確立이 家族制度의 变化에 同伴되는 諸問題만을 基盤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各種의 既存 福祉对策이 個人單位에 대하여 重点을 두어 온 事實을 상기할 때, 家族이 人間生活의 基礎的인 單位라고 하는 것과 家族의 健全한 영위가 確保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認識할 때, 家族의 役割에 대한 再考가 促求된다.

또한 福祉对策의 如何에 따라 家族形成, 機能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협소한 住宅의 提供이 政策의 意圖와는 달리 家族의 축소를 強要하게 되어 必然的으로 家族形態의 变化를 增大시키는 데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게 됨은 明白한 事實이다.

以上과 같이 家族單位-理想的으로는 個人的인 対応을 포함하는-에 대한 福祉对策의 方向과 視点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래에서 今後, 社会福祉에 대한 課題를 要約하여 보기로 하자.

1) 社会福祉 施設에 대한 理念과 供給 方向 및 整備計劃: 正確한 需要 把握을 토대로 하여 施設体系의 確立이 必要하다. 勿論, 收容施設과 住宅問題가 그 基礎가 되어야 하겠으며 그것과 병행하여 地域社会中心의 施設問題가 論議되어야 하겠다.

2) 社会福祉의 要員問題: 社会福祉가 그 性格上 많은 人的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要員의 養成 및 教育을 포함하는 要員 確保对策이 必要하다.

3) 社会福祉의 運營問題: 社会福祉 施設의 公共性에 대한 認識이 必要하며, 施設의 運營·管理의 問題가 단순히 善意나 經驗에만 의존될 수는 없겠다.

4) 社会福祉의 추진에 대한 財政的 問題: 社会福祉의 추진에 대한 公私의 役割分担에 따라 公共機關에 의한 財源確保 以外에 民間에 의한 社会福祉 活動을 추진하는 일의 重要性은 勿論, 그러한 活動의 安定과 계속적인 지속을 위하여 民間의 自發的인 財源 確保가 必要하겠다.

5) 社会福祉에 대한 關連 諸法의 問題 以上の 1) ~ 4) 까지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諸法의 整備가 필요 하겠다.

社会福祉의 發展과 現實的인 要請에 対応하기 위한 先行條件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와 같은 課題들로 要約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課題가 具体化되기 위해서는 現在의 實態를 정확히 把握하여야만 하겠다.

總合的인 實態調査, 基礎資料의 整備가 時急히 要求되어 진다. 그리고, 關連 社会 各分野에 걸친 研究体制의 確立과 助成이 따라야 하겠다.

漢陽工大助教授